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부 소속기관인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공관 사건사고 전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중 13명(3등급 또는 4등급 13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외교부 소속기관인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공관 사건사고 전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30명(3등급 또는 4등급 30명)의 평가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1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입법예고(2024. 12. 00. ~ 12.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외교부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평가기간
가. 공관 사건사고 전담 업무 (대한민국재외공관)	15명 (3등급 또는 4등급 15명)	2025년 12월 31일까지
나. 공관 사건사고 전담 업무 (대한민국재외공관)	8명 (3등급 또는 4등급 8명)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 공관 사건사고 전담 업무 (대한민국재외공관)	7명 (3등급 또는 4등급 7명)	2025년 12월 31일까지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